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97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진성준·김영진·안태준

황정아 • 이기헌 • 이재정

위성곤 • 문진석 • 박홍근

김태년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 공시설·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항공박물관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 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양여 및 사용허가·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박물관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양
	여 및 사용허가・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
	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박물관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게 할 수
	<u>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
	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
	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
	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
	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
	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